



- ……지난 10월 28일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김재춘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 ……로 관리법 개정안과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정소……○
- ……영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을 국회 속기록에서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편집자 주>……○

○委員長 李炳玉：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次農水產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 飼料管理法中 改正法律案

○委員長 李炳玉：議事日程 第1項 飼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계속하여 上程하겠습니다。

土曜日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豫備檢討報告가 끝났으므로 오늘은 質疑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民主共和黨의 金在春委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春委員：民主共和黨의 金在春입니다。

오늘 飼料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審議하는데 있어서 평소 飼料管理問題에 대해서 檢討하고 또 本委員이 느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꼭 是正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政府는 현재까지 農漁村 즉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해서 힘을 기울여 왔고 또 農漁村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農產問題에 대해서는 발전이라기 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後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생각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飼料管理法을 改正하는데 있어서의 問題點은 어디까지나 農產을 위해서 즉

養畜農家를 돋기 위해서 이 法이 改正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生產者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法이 改正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飼料業者를 돋기 위한 法律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현재까지 政府는 消費者保護를 위해서 많은 补助를 하면서 農產政策을 써 왔습니다마는 이 生產者를 保護하기 위한 飼料問題에 대해서는 동한해 웠을 뿐만아니라 事實上으로 보아서는 그 회생을 強要해온 결과가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小麥이나 또한 玉太나 이의 대부분 우리 國內生產에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外國에 依存해 왔고 또 그 飼料 대부분을 거의 100% 美國에서 들여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消費者保護를 위해서 들여오는 小麥이나 또한 우리 農產農家를 위해서 生產者를 위해서 들여오는 이 玉太나 國際穀價波動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消費者를 위해서 들여오는 小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政府가 많은 犯牲을 무릅쓰고 補償을 해 왔습니다만, 生產者保護를 위한 農產飼料를 들여오는 것도 똑같이 穀價波動에 영향을 받아서 들여오는 것인데 하등의 補償이 없이 그대로 과거와 같은 運營狀態로一貫해 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할 것 같으면 政府가 消費者를 위해서는 힘을 기우렸지만 生產者를 위해서는 하등의 對策이

없이 犠牲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飼料는 飼料業者들이 自己네 일정한 「코스트」를 維持하지 못하니까 그 質이 低下되고 또 그 飼料를 供給받은 養畜農家들은 많은 動物의 飼料品質이 좋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은 犠牲을 가져 온 것입니다.

또한 政府가 養畜과 관련된 一定한 政策이 一貫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飼料에 依한 영향을 받는데다가 또한 生產에서 消費者에게 가는 그 어간에 또 二重으로 犠牲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例를 들면 돼지 또는 닭이라든가 養畜家들이 一定한 生產費를 들여서 生產한 것이 一定한 利潤이 保障이 되어야 할텐데 利潤이 保障되기는 커녕 生產價 以下로 販賣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一般工產品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生產해서 倉庫에 貯藏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한 長期保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韓國의 實情은 流通過程에 있어서 農漁村開發公社같은 것이 있는데 예당초 그 創設目的이 農村에서 生產되는 그 生產品을 消費者한테 가는 어간에 그流通을 위해서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長期貯藏을 해서 適正價格에 出荷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그 會社들이 不實해서 長期貯藏할 수 있는 그러한 與件이 갖추어 지지 않은 까닭으로 養畜業者들은 生產價 以下로라도 하루빨리 出荷하지 않으면 損害를 가져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出荷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中間商人이 반드시 介在되는데 이 中間商人은 養畜農家에서 협값으로 사 가지고 消費者에게는 비싼 價格으로, 自己네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이런 式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畜產物生產과 畜產物流通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養畜業者들이 오늘날 苦難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飼料管理法을 改正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飼料業者를 為해서 改正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전체의 畜農家를 위

해서, 生產者를 保護하기 위한 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趣旨를 보면 어디까지나 飼料管理法自體에 대해서 神經을 쓰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生產者 즉 農民을 保護하기 위해서 이 法이 制定되었다는 것을 제가 얼핏 檢討해본 結果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法에 대해서 確固하게 제가 政府에 質疑하고 싶은 것은 政府가 消費者를 保護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生產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政府가 補償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補償할 용의가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管理法이 改正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意義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重複되는 얘기 같습니까는 飼料業者自體의 利益은 保障해 주며 또 飼料業者自體의 어떠한 適正價格을 維持해 주기 위해서 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製粉業者들이 들여오는 小麥과 마찬가지로 飼料業者가 그 玉太를 들여온다든지 혹은 飼料를 위한 小麥이라든지 옥수수를 들여올 때 같은 與件下에서 들여오는 것 이니까 消費者를 위해서 保護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消費者를 위해서 補償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飼料業者들도 一定한 製粉業者들이 갖는 利潤을 갖도록 하는 同時에, 아무리 飼料價格이 暴騰하더라도 生產者保護를 위해서 政府가 補償을 해 주든지 一般養畜農家에게 영향이 없도록 해 주어야만 이 나라 畜產業을 保護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政府가 補助라는 問題點에 介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그 補助가 결국은 一般製粉業者와 마찬가지로 補償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飼料管理法은 어디까지나 畜產 말하자면 養畜農家가 生產해서 出荷하는 문제와 函數關係가 있기 때문에 결들여서 畜產問題에 있어서는 流通過程이 確立되기 전에는 이 飼料管理法이 잘 改正했다 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서 飼料管理法을 改正하는데 있어 그 流通過程을 確立하

는데 더 神經을 써야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農水產部長官께서는 이 畜產物流通過程을 현재와 같은 方法을 떠나서 180度 다른 形態로 確立시킬 用意는 없는지?

다시 얘기해서 生產者는 어떠한 不景氣라 할지라도 그들의 生產品이 일정한 利益이 保障된 상태에서 出荷할 수 있는 制度上의 流通 문제에 對하여 政府가 보다 현재 이상으로 神經을 써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改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農水產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一新하여 좀 農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損害를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對策이 없는 것인가?

또 한가지 다음은 이 飼料管理에 關聯性과 또 飼料管理法과 聯關係 있는 問題로서 農水產部所官은 아닙니다만 農水產部에서 이러한 問題點을 관계되는 財務部에다 충고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고 또 이 法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飼料原價가 外國에서 導入해 왔을 경우 一般製紗業者들이 들여 오는 小麥과 같은 것과 비교할때 그 通關에 있어서 굉장히 差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製紗業者들은 港口에서 일단 通關이 되는데 飼料業者들은 港口에서 通關이 안되고 각 飼料工場으로 運搬을 해다 놓고 그 飼料工場에서 결국은 他所에 裝置되어 가지고 거기서 通關되는 이러한 式으로 되어 왔습니다.

現行法上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 運營하는데 있어서 물론 運營의 方法에도 달려 있지만 차잇 잘못하면 그 飼料業者들이 라든가 또 飼料를 가져가는 養畜業者들이 다 本意 아니게 罪人으로 矯導所에 가야 하는 이러한 사태로 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現行法으로 할 것 같으면 도저히 飼料通關을 할 수가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飼料가 들어오게 되면 각 工場이 1,000t이면 1,000t을 配定하는데 그 1,000t을 運搬하는데 적어도 15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15日 동안에는 養畜農家에서 필요할 때 그 飼料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法대로 하면은 待期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 일단 1,000t 配定된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倉庫에서 하나 둘 세워 가지고 완전히 들여온 다음에 通關이 되는 通關이 된 다음에 作業을 하게 되고 또 作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現行法으로 볼때 國內의 原料도 같이 外國에서 들여온 것과 마찬가지로 取扱해서 通關되어야 하며 그 通關되는 문제가 결국은 엄격히 따지면은 稅關에서 飼料分析家를 페려다가 專門家들로 하여금 일일이 하나 하나 제대로 배합이 됐느냐 안했느냐 또 일정한 热量價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러한 모든 문제를 檢討를 해야만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現行法을 충실히 履行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국 1,000t을 제대로 分析을 해서 通關을 시키자면 적어도 1年은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年을 걸려서 이것을 通關한다고 하면 대개 結果的으로 이것은 實行不可能한 法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지한 農民들 무지한 飼料工場을 運營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네들이 結果的으로 本意아니게 罪를 범하고 本意아니게 矯導所를 가야 하는 사태를 자아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法을 改正해야 할 理由는 現行法은 과거에 불과 몇萬t을 들여온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법이고 지금은 적어도 50萬t 이상을 들여오게 되기 때문에 狀況이 달라졌으며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오늘에는 50萬t 이상이라는 막대한 量을 들여 오기 때문에 그 狀況이 바뀌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農水產部長官께서 아울러서 財務部와 協議를 해 가지고 이 法이 改正되어서 養畜農家에서 안심하고 그러한 無知에서 일어나는 犯法行爲가 없이 하며 畜產業務를遂行하는데 있어서 支障이 없게 改正하도록 할用意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農水產部長官께 묻고 싶고 또 이것이 必然的으로 改正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은 이 飼料管理法을 改正하는데 있어서 養畜農家 즉 生產者를 保護하고 또 이를 供給하는

飼料業者들이 부당한 이익과 또 부당한 損害를 보지 않도록 하여 飼料生產者와 養畜農家 즉 生產者 이 사람네들을 保護하고 同時に 消費者에게도 적절한 價格에 消費될 수 있도록 이 飼料管理法과 관련된 流通問題에서도 더 한층 改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李炳玉：다음 政府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產部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產部長官 鄭韶永：金在春委員質疑에 먼저 答辯드리겠습니다. 順序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農產物生產者에게 利潤이 保障되도록 流通制度上의 改善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政府의 對策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流通構造面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都賣市場法에 의해 가지고 近代의 인 方向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近間에 農產物價格의 起伏이 있었던 것은 一時的인 供給過剩에서 오는 現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좀더 長期的으로 내다 본다면 결코 展望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機會 있는 대로 좀더 상세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사정이改善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制度面에 있어 가지고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農產物都賣市場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流通過程의近代化를 위해서繼續努力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施行한 段階부터……소의 경우 물을 먹여 가지고 消費者에게 被害를 준다는 이러한 얘기도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範圍內에서는過去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部分的으로繼續 물을 먹여 가지고 파는 不當한 行爲를 하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엄중히 團束을 해서 法에 의해서 严罰에 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民間이 하고 있는 協進하고 盛豐이 두 군데에서 주로 處理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農

協에서 또 같은 市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農協이 차지하는 比率이 全體比率의 約 20%로 큰 比率이 못 됩니다.

우리생각으로는 農協이 擔當하는 比率을 조금이라도 높임으로써 民間業者에 대한 善意의 「체크」 내지 民間業者의 不當한 行爲를 間接的으로 規制할 수 있는 그런 短期的役割을 시킴과 아울러 長期的으로 경우에 따라서 協進과 盛豐을 政府機構인 다른데 혹은 農協自體가 引受를 해 가지고 公共機關에서 運營하는 것도 한가지 方法이 아니나 해서 그것도 또 研究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食糧部門에 있어 가지고 小麥粉補助를 하고 있는데 養畜農家에 補助를 하는 意味에서라도 飼料價格이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飼料原料의 原價가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補助形式을 取해 가지고 養畜農家에게 惠澤을 줄用意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시는대로 이번 改正案 20條 2項에 支援할 수 있는 根據를準備를 했음을니다. 이렇게 制度의 으로는 길이 트여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계속 좀더 신중히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通關에 있어 가지고 지금 配合飼料會社에서 通關業務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支障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옥수수를 飼料用으로 導入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關稅가 완전히 免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關稅 免稅品目이 다른 用途에 使用될 때에는 關稅포탈이 되는 까닭에 제가 알기에는 철저한 事後管理를 위해서 製品에서 나오는 그 段階에서 通關節次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金委員이 指摘하신대로 過去와는 달리 상당한 分量이 현재 輸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原料通關으로 轉換할 수 있는 可能性에 대해서 계속 財務部하고 協議를 해서 節次上 簡素化할 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簡素化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 租稅減免規制法 改正에 關한 질의

○金在春委員 民主共和黨의 金在春입니다.  
1975年度의 豫算案을 審議하는데 앞서서 農業政策에 대한 質疑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委員은 오늘날 農村에 처해져 있는 現狀態를 痛歎하고 싶은 錯難한 심정인 것입니다。世界的으로 4億의 人口가 飢餓線上에서 허덕이고 있고 國內的으로는 政府의 집요한 食糧施策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自給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을 뿐만 아니라 8億弗이라는 막대한 外貨를 들여야만이 우리가 1年間 먹고 살수 있는 이러한 立場에 있는데 우리가 현재 輸出目標額이 45億弗이라고 하면 거기에 20%의 原料導入을 控除하고 純外貨收入의 3分의 1을 소비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食糧을 확보할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糧特財政만 보더라도 1974年末까지 1,400億이라는 엄청난 赤字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肥料計定만하더라도 377億이라는 엄청난 赤字를 가져오게 되고 또 1975年度에는 이와같은 추세로 본다면 糧穀特別會計에서 600億원이 赤字를 더 加算하지 않으면 안될 實情에 있고 뿐만 아니라 肥料도 1974年度의 赤字를 포함해서 약 1,000億이라는 막대한 赤字를 면치 못하게된 것을 볼때에 1975年度에는 약 3,000億이라는 赤字를 우리가 豫想해야 하는데 이 赤字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韓銀에서 負擔하고 또 韓銀에서는 이 赤字를 메꾸는 方法은 貨幣를 찍어내는 方法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여기에 또한 고민은 食糧增產을 위해서 經濟企劃院에서도 비명을 올리고 있고 農水產部門에 대한 投融資때문에 다른 分野의 投融資에支障을 가져온다는 것 다시 알기쉽게 얘기해서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게 될 이러한 비참한 狀態에 있다는 것입니다。즉 우리 農水產分野에 3,000億이라는 막대한 돈을 投融資로 둘려도 農水產分野는 만족하지 않을뿐 아니라 또 政府는 이것

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이러한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심각한 危機에 처해있는 이 마당에 本委員은 이 時點에서 農業政策을 과감하게 어떠한 轉換을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지금과 같은 그러한 狀態로 나가면은 도저히 이 어려운 難局을 해치고 또 끌어나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어떠한 農水產部自體만 解決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政府가 이 어려운 難局을 해쳐나가기 위해서 他部署까지도 總動員하고 國民한테 呼訴를 하더라도 이것을 開拓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어 政府도 이러한 狀況아래서 農政의 三大目標를 當面課題로 세워 그 첫째 食糧增產을 最優先의으로 推進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1975年度豫算案說明에 뜻을 박았나 봅니다。

本委員은 農水產部가 食糧增產을 最優先의으로 하는 政策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뜻치않는 중요한 문제로서는 食糧消費抑制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오늘날 이 食糧難의 어려운 危機를 '파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過去의 歷史나 過去의 統計로 봐서 나는 어떠한 政策의 轉換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生產하는 것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1945年 우리가 解放되기 이전의 統計를 좀 考察해 보자는 것입니다.

1936年에는 우리의 糧穀生產이 우리 需要를 능가해 가지고 173.6%가 됐습니다. 1939年에는 137.1%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우리가 解放된때에는 114.2%라는 우리 自給率을 능가한 生產이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日本의 食糧倉庫의 役割을 했을 당시 우리는 우리의 國民이 먹고 남았다는 것을 統計上에 立證을 했고 또 지금 農水產부가 그것을 參考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65年에는 94.2%의 自給率이다. 1970年에는 82.6% 1974年에는 68.2%로 이렇게 점점 내려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億弗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는 食糧을 充足시킬 수 없다 이

려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消費가 急增하여 不足되는 現象을 일으키고 있지만서도 그러나 食糧生產面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이 같이 考察해 볼 때 1946年에는 우리가 1,987萬9,000石을 生產을 했습니다. 1949年에는 2,360萬9,000石을 生產을 했고 우리가 그해에 46萬8,000石을 導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왜 1949年の 統計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할것 같으면 1949年에 처음으로 解放이 되어 가지고 우리 大韓民國의 人口調查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生產面을 쭉 말씀드리자면 1950年에 2,357萬2,000石을 生產했다. 1960年에는 2,654萬 3,000石 1970年에는 5,480萬8,000Stone 그리고 지금 1973年度의 統計밖에 없는데 1973年的 統計는 5,553萬6,000Stone을 우리가 生產했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974年에 비해서 지금 生產하는 것은 2.5倍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人口는解放後 아까 말씀대로 1949년에 열마되어었느냐 할것 같으면 1,990萬名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73年度의 人口統計는 3,290萬名 지금 現時點의 大韓民國 人口統計는 3,345萬名입니다.

그리면 人口는 1945年을 基準으로 할것 같으면 165% 그때에 비해서 65%의 增加를 가져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食糧은 235%가 增產했어요. 人口는 65%밖에 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不足되는 것이냐 疑問을 안가질 수 없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949年的 人口調查를 基點으로 해서 보더라도 生產의 增加는 240%에 到達하는데 人口는 165% 그러니까 比率이…… 훨씬 生產이 높은데 消費는 每年 늘어가고 있으며 生產增加는 계속 增加一路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生產이 이렇게 急增되는 消費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고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農水產部長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政府는 食糧의 정확한 需給計劃을 樹立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또한 食糧의 消費抑制를 보다 具體的으로 강하게 政

策을 樹立하지 않고는 現難局을 打開해 나갈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農水產部가 현재 調查한 統計를 보더라도 非食糧消費에 만도 797萬石이라는 엄청난 數字입니다.

797萬石의 그 非食糧消費 말하자면 이것은 節約할 수도 있는 문제요. 이것을 살펴보면 糧穀의 保管管理上의 소홀이라든가 또 自然減量이라든가 이렇게해서 153萬石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全國에 150萬마리의 개가 먹는 것이 90萬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쥐 1億마리가 먹는 것이 250萬石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으로 轉換할 수 있는 濁酒라든가 酒精정종이라든가 소주 이런 것이 304萬石이다. 그래서 797萬Stone이라는것이 非食糧消費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農水產部가 食糧消費의 抑制를 위한 具體的이고 또 國民과 政府各部處間に 철저한 協助와 協力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떤 法이라든가 政策이 세워지지 않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政府는 農業基本法 第4條의 依據해서 每年 農業의 生產經營價格所得 및 國民의 生活水準 등에 관한 施策을 明示한 文書 및 農業動向을 農業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豫算案과 함께 國會의 提出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그 報告를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대한 問題點을 뒤로 미루고 第5條에 보면 前條의 規定에 의해서 그 報告書를 國會에 提出하는데 農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그 하나를 보더라도 形式的이고 또 統計의 羅列인 이런 것이 始終一貫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또 理解할 수 없는것은 農水產部가 2年제 一般食糧需給計劃을 發表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인지 여하튼 發表하지 않고 있는데 各種 農業統計의 公表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統計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公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어요. 또 農業基準法 第6條에 보면 政府는

重要 農產物의 生產과 需要에 관한 觀測을 해서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서 公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法입니다. 또한 이것은 強制規定이에요. 이것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것이 아니라 해야된다 이 것입니다. 法에 이것은 義務의이고 強制規定으로써 해야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국은 農民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장님마냥 끌려가는 이러한 現象이다 이것이에요.

未來를豫示해 주고 未來에 대하여 農民이 자기가 數字가 맞고 안맞고 하는 문제를 내다보고 農事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農事를 짓는 그러한 모양이 되니까 直目的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法에 정해져 있는 이 自體를 農水產部가 어째서 國民을 장님으로 끌고 갈려고 하느냐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 한가지는 糧穀收買價格決定에 있어서 過去에는 國會同意를 얻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國會同意를 얻게된 것은 당연히 國民의 財產權을 保護하고 또한 國會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憲法上 保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非常國務會議에서 糧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糧穀證券法中改正案 또 既肥交換에 관한法中改正案 이러한 것을 전부 通過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自動的으로 瘦止했으니까 國會의 同意없이 마음대로決定할 수가 있게 되어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法上으로 또 그 基本精神으로 봐서는 國民의 財產權을 侵害하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事實은 農業基本法의 立法精神에 違背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農水產部長官께서 農水產部의 見解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農民이 안심하고 앞을 내다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農民의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소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짐장을 심어 가지고 김장밭을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

고 누가 씨앗값이라도 주고 '뽑아갔으면' 하는 것이 오늘날의 農村의 實態을 시다. 이런 일이 어디서 빚어진 것인가 하면 未來를豫示해 주지않고 法上에 規定되어 있고 保障되어 있으며 保障받아야 될 權利를 剝脫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農政의 三大目標중 둘째는 農漁民의所得增大로 農漁村과 都市民間의 所得隔差를 解消한다는 것은 이번豫算案에 三大目標의 두번째로 뭇을 박고 있는데 지금 狀態 그대로 해 나가면은 口號에 그치지 않느냐하는 點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것을 都市와 農村間의 隔差를 없앤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이 糧穀을 生產하는 農民은 生產價를 下迴한다 畜產을 하는 사람은 生產價未達이다. 養蠶을 하는 사람은 養蠶하는 사람대로 國際市場이 물고오는 破動에 겹쳐서 말하자면 不況이다 이것이에요.

또는 中共의 橫暴로 不況이다. 그러니까 養蠶이나 모든 것이 지금 絶望이다. 그 다음에 水產問題만 하더라도 지난번의 海洋法 같은것이 全部 자기네 領海를 擴張하기 為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遠洋漁業問題도 여러가지로 制約을 받게 됐어요. 이런 모든 問題를 보더라도 전부가 農漁民所得의增대는 커녕 農漁民所得의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만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가 이번에 내놓은豫算에는 農民과 都市民間의 隔差를 좁힌다는 뚜렷한 點과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提示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農水產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農村과 都市의 隔差를 좁힌다는 것인지 이런 問제를 뚜렷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農政의 3大目標中에 農水產物의 輸出增대와 流通構造의 改善은 또한 뭇박고 있는데 현재 農水產部가 더 잘 알겠읍니다마는 輸出增대는 커녕 輸出이 미진한 상태로 不振하고 있습니다. 流通構造는 改善하기는 커녕 도리어 節減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輸出을 增大하고 流通을 改善해 가지고 農漁村開發公社가

200億이라는 막대한 資本金을 가지고 또 子會社까지 많이 만들어 가지고 設立이 되었는데 農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農民을 위해서 農漁民所得增大에 얼마만큼 기여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가 流通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하나의 方편 하나의 改善策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葡萄糖會社나 만들고 또 심지어는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빚들이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怨聲을 샀다 이것이에요. 流通改善을 하여 農民이 生產한 것을 長期貯藏하고 農民이 하루라도 더 手中に 갖고 있으면 損害가 나니까 재빨리 農漁村開發公社 같은데서 사들이고 이것을 貯藏하여 적절한 시기에 가서 出荷하는 말하자면 流通上의 流通作業確立을 위해서 생긴 것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農水產部가 農政의 3大目標를 내세우는 정도로 重要性을 갖는다면 그 重要性에 봇지않게 보다 具體的이고 또 國民이 따라갈 수 있으며 國會에서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豫算을 대출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方案이 成立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見解를 長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農產關係에 關聯이 있는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는 養畜家를 政府가 장려하려면 앞을 내다보고서 장려하는 것이 輸出이 되어서 農民들이 따라 가도록 消化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政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本意가 아니지만 規定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輸出을 增大한다 했지만 輸出은 안되고 生產地에서는 自然生產品價格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政府가 生產意慾을 돋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은 좋으나 생산된 것을 消化못시키고 있는 관계로 放觀하고 있는 상태라면 國民의 生產意慾을 쥐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또한 農水產部는 뚜렷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農水產部로

서는 果然 여기에 대한 所信과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물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明年부터 施行케될 不動產讓渡稅法에서 畜產養育者라든가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혜택을 받아 다른 고장으로 移轉되어 가면 移轉되어가는 데에서 혜택을 받고 그랬는데 不動產讓渡稅法이 새로 制定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것입니다.

農水產部로서 관계되는 部處와 절충해서 이 法이 適用되었을 때 종전과 같이 免除토록 農水產部가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現行所得稅法 및 租稅減免規制法에 의거하면 1975년 까지 畜產에 대해서 全額免除를 하게 되었고 1975년까지는 半額을 免除키로 된 이것을 畜產業에 대하 所得稅法 租稅減免規制法을 改正해서 1988년까지 全額免除하고 畜產振興에 도움을 줄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國務總理께서도 畜產團體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政府立法으로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農水產部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農產關係 事業場을 移轉했을 경우 현재까지 法에서 免除되었던 財產稅를 3年 5年 漱及해서 內務部에서 徵收하고 있는 것입니다. 法의 解釋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法의으로 徵收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3年을 漱及해 가지고 이렇게 無法으로 內務部가 畜產業者에게 雪上加霜格으로 괴로움을 주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關係者側에서 內務部에다가 公文을 올리고 建議文을 올리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答辯이 없이 內務部에서는 계속해서 徵收해야 된다고 하여 많은 사람에게 被害를 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관계되는 部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역시 農水產部에서 農民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력한 절충한 있어야 할 것인데 이점을 어떻게 절충할 것이며 앞으로 종전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政府가 10大重點施策으로서 農耕地의 擴大와 保存을 위해 農地開發促進法을 年內에 制定한다는데 여기에서 물론 완전히 制定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 다마는 이에 앞서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食糧增產의 길을 農水產部가 과감하게 自給할 수 있는 길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現在에 開墾할 수 있는 것을 農水產部長官으로서 마음 대로 開墾할 수 있도록 山林廳이 다시 農水產部로 와야한다고 보는 것이며 農水產部의 힘으로 안되면 우리 國民의 死活問題로서 앞으로는 돈을 가지고도 食糧을 導入할 수 없는 위험한 사태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食糧을 增產하려면 다음대로 開發해서 農水產部가 힘있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우리 委員들은 다같이 이 山林廳이 內務部로 간데에 대해서 불만스 럽게 생각할뿐 아니라 內務部로 옮겨져서 대체 國家와 國民에 무슨 利益이 있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당한 실적도 올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슨 실적이 있고 우리 國家와 國民을 위해서 어떤 利益이 있는지? 오히려 行政上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는 山林廳을 하루 빨리 다시 農水產部로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問題를 農水產部 스스로가 建議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促進法의 내용을 잠깐 檢討해본 결과 農水產部長官의 許可로 되어 있어 行政上 여러 가지 施行에 있어서 農民이 손쉽게 開發될 수 있겠끔 돼있지 않아서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許可制보다도 申告制로 해서 이 法 테두리 내에서 누구나 義務的으로 申告해 가지고 開發할 수 있고 또 그 法에 따라서 國家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전에는 일일이 農水產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現地 道나 郡에서 施行過程에 있어서 제대로 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린벨트」도 現行法으로는 農事도 짓고 畜產도 할수 있게 许

容되어 있어요. 그러나 現地에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法으로 保障이 되어 있더라도 실지로 施行에 옮길때에는 하나도 施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이번 促進法에 충분히 反映이 되어서 손쉽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點을 法의 但書規定에 넣어 확실히 “許容”을 “申告制”로 고칠 수 없는가? 農水產部長官의 見解를 묻는 바입니다.

너무 長期間 質疑했읍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現時點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食糧難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政策의 轉換없이 현재와 같은 碩縫策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統計를 보더라도 이러한 막대한 生產을 해 가지고도 어째서 부족하여 8億에 達하는 外穀을 들여 오느냐? 안들여 오고도 현재 生產된 것 가지고 우리 國民이 克服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과감하게 8億弗을 増產에 둘린다면 1, 2年 이내에 이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며 더 손쉽게 될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長官께 答辯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農業政策을 轉換해 가지고 이 難局을 打開할 수 있도록 속시원히 答辯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質疑를 끝마치겠습니다.

농수산부장관 정소영：金在春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食糧需要計劃을 왜 發表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로마」에서도 PL480문제에 대해서 交涉을 했고 또한 과거 쭉 우리나라 食糧問題를 위해서 美國의 PL480문제하고 連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태여 對美交涉에 있어 가지고 數字를 속이자는 그런 意圖도 아닙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對外的으로 交涉을 하는데 구태여 食糧需結計劃을 미리 發表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不利하게 만들어 놓고 對外의인 交涉을 할 그러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政府方針에 따라서多少 앞뒤의 順序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조

금도 우리 國民들의 食糧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그려는 것이지 그런 內容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理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收買價格決定을 國會의 同意를 하지 않음으로서 國民의 財產權이 侵害當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역시 收買價格決定이라 것은 金委員님이 잘 아시는데로 제가 해보니까 「타이밍」이라든지 그 金融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데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政府가 어떤 線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언제 發表하느냐 그동안 어느 線으로 하느냐 그런 內容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關係部處間에 얹혀 있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對外的으로 發表하는 時期問題 그것하고 關聯해서 結果的으로 收買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國會의 同意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充分한 議論을 事前에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國會에서 미리 決定을 해 가지고 發表를 해 놓으면 結果的으로 國民들을 위해서 收買를 하고 農民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糧政을 遂行하는 過程에 있어 가지고 「マイ너스」가 되는 그런 結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政府에 맡겨주시면 結果의 으로는 農民들을 生產意慾을 鼓吹하고 또한 農民들所得增大에 支障이 없도록 하면서 또한 政府가 確保해야 되는 物量에도 支障이 없도록 決定을 하는 것이 옳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政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國民의 財產權이 侵害될 정도로 낮은 價格으로 收買價格를 決定한 일도 없거니와 또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各種統計를 發表를 안하고 있는데 그理由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統計內容에 따라 가지고는 政策的으로 發表를 해 가지고 國民들이나 農民들에게 得이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런 統計를 쓸데없이 發表를 해 가지고 國家의混線을 招來할 수 있는 그런 內容도 많습니다.

따라서 行政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國民

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內容의으로 보아서 發表하는 時期를 끄는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 意圖는 結果的으로 國民들을 위해서 調整을 한다. 이렇게 理解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統計를 作成하고 있는 內容을 잘 아시는대로 農業基本統計 食糧生產統計 生產費調查 家畜統計 등등 여러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절대로 그 內容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좁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農漁民所得增大를 위한豫算上에 反映되어 있는 內容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좁힌다는 것은 반드시豫算에 反映한部分하고 直結시켜서 所得隔差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金委員님 말씀대로 그것도 해야되겠지요. 그以外에 農民들이 生產部門에 있어 가지고 食糧生產도 좋고 經濟作物도 좋고 畜產도 좋고 自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增產을 통해 가지고 最大限의 生產을 해서 政府는 金委員님이 指摘하신 대로 適正價格을 保障을 함으로써 全體의 所得面에 있어 가지고 所得增大를 期함으로써 部分的으로는 都農間의 所得隔差가 좁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農漁民所得增大事業中에서豫算에 의한 國庫補助나 혹은 財政支援보다는 금년부터 대개 金融으로 轉換을 했기 때문에 金融支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內容입니다.

따라서 今年度만 하더라도 總額을 말씀드리면 國庫補助가 不過 13億 밖에 안되고 金融支援으로 해서 間接的으로 나가는 것이 95億이고 來年度에는 國庫補助가 23億 約 10億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金融支援이 136億으로 늘어나서 159億이라는 상당한 資金이 支援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養畜家の增產意慾鼓吹를 위한 生產費保障策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역시 養畜家の所得保護를 위해 가지고는 系統出荷制度를 갖다가 좀더 確立을 해야 되겠고 또하可能하나 그러면 輸出市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金委員님이 더 專門家이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금 前까지만 해도 豚肉價格이 상당히 떨어져서 農民들의 不滿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多幸히 今年에 臺灣이 8,000萬弗 정도 輸出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輸出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最近의 얘기를 들으니까 650萬弗이니까 상당히 輸出實績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年末까지 成績이 좋다고 하면 800萬弗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00萬弗까지도 가능하지 않음이 이렇게 내다 보기 때문에 역시 폐지하고 소 分野에 있어 가지고는 供給이 需要보다 많다는 그러한 內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輸出의 칭구가 끌려진다고 그러면 파잉 공급처리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지 分野에 있어서는 日本의 숨통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 分野에 있어서는 아직 까지도 그런 길을 模索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이 트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檢查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輸出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길하고 연결되기 전에 국내에서 過剩되는 部門에 대해 가지고 資金支援을 해 가지고 備蓄을 해주면 過剩供給에 대해서 短期의 이나마 상당한 過剩供給量을 吸收할 수 있기 때문에 國內價格面이나 農家所得面에 있어서는 短期的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國內販賣價格에 있어 가지고 金龍星委員님하고 金在春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中產層 이상이 먹는 肉類에 대해 가지고 다소 市場價格이 올라가더라도 神經過敏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되면 農家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所得稅 分野에서 이 畜產分野에 대해 가지고 遷及徵收를 하고 있다. 지금 實務者의 얘기는 法務部에서 有權解釋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有權解釋이 나오는 대를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畜產分野에 대해 가지고

法人稅하고 營業稅가 免除되는 時限은 75年까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財務部하고 議論해서 今年에 租稅減免規制法에다가 넣어 가지고 今年의 경우 延期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内務部하고 財務部에서는 반드시 協調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來年度에는 反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農地의 擴大를 促進하기 위해서 山林廳을 農水產部傘下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나 이러한 말씀인데 政策施行面에 있어 가지고 金在春委員 말씀 그대로입니다. 山林廳이 과거처럼 農水產部傘下機關이 된다면 이러한 면에 있어 가지고 行政整理 있어 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内務部로 移管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1년쯤 더 해보고 요구하는 것이 時期的으로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開墾許可를 申告制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어제도 共和黨하고 雜政會 懇談會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開墾許可節次를 大幅的으로 簡素化해서 行政節次面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보다도 신속하게 아주 간단하게 節次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許可制로 하더라도 과거하고 달리 실제로 開墾事業을 推進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農水產部가 關係部處와 접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節次 內容은 종전에는 12個 단계로 되어 있었고 평균 365日 이상 所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5단계로 줄여 가지고 85日 정도에서 모든 節次가 끝날 수 있도록 大幅簡素化했고 85日중의 公示期間을 제외하면 실제로 25일로써 모든 것이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補充說明드리겠습니다.

○金在春委員: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可及의면 質疑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하고도 많은 農民들의 財產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득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實踐에 옮기기 위해서는 또 質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政府는 畜產을 장려하기 위해서 法人稅法所

得稅法을 減免하고 있습니다.

昨今에 와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난 1972년의 非常國務會議에서 통과된 法에 의해서 현재까지 免稅되었던 租稅減免規制法 第9條 4項 또는 第10條 9項에 의해서 현재까지 免稅되었던것을 昨今에 와가지고 追徵함으로 해서 많은 養畜業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內務部가 근래까지 徵收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새삼스러운 法의 해석을 가지고 요즈음에 와서 이것을 徵收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施行官廳인 內務部長官에게 問議한 결과 內務部長官은 法根本精神에 의해서는 免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나 法律이 이것을 追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3年前 것인 5年前 것인 追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2年 非常國務會議에서 議決한 條項을 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免稅된 3年前 5年前 것까지 徵收를 한다는 것은 근본 法精神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해당 政府가 畜產을 장려하기 위해서 法人稅所得稅 또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해서 이때까지 減免해 왔던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非常國務會議에서 이와 같은 근본 法精神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번에 第9條 4項 第10條 9項이 改正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를 改正하기 이전에는 이 租稅減免法에 의해서 免稅되어 있었다 그 것입니다. 그런데 이 法이 改正된 이후에 그 이전의 것까지도 徵收한다는 것은 法精神으로 보거나 해당 大統領閣下나 國務總理가 畜產에 대해서 강력히 農民에게 장려를 해왔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農民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畜產業者들은 倒產狀態에 있는 것입니다. 現在 이러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희 法的으로 이것을 徵收하지 못할 것 까지도 徵收한다 이것이에요. 都市公害로 혹은 都市計劃에 의거해 가지고 移轉한 것 또 事業場을 확대하기 위해, 移轉한 것이 도저히 經營不實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지탱해 갈 수 없는 이런 등등 모든것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근본 法精神에 違背되지 않는 사실까지도 免稅를 하지 않고 그대로 追徵하고 있기 때문에

本委員이 照會해 본 결과 內務部長官은 法의 法律의in 用語解釋으로서는 徵收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追徵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追徵을 해야할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追徵을 하고 있습니다. 「內務部長官이 저한테 보내온 公文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租稅減免規制法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政府가 財務部와 內務部하고 協議해 가지고 당연히 이의 改正要請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議員立法으로 改正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非常國務會議에서 通過된 것입니다. 非常國務會議에서 通過된 문제를 農水產部가 事前に 알고있는지 없는지? 農水產部나 財務部나 혹은 內務部나 3個部處間に 반드시 상의가 되어서 非常國務會議에서 이것이 通過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에 農水產部에서는 뭘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非常國務會議에서 이것을 通過시켜 가지고 追徵을 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기려고 했으니다마는 제가 여기 法律을 쭉 보니까 과거에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해서 第9條하고 10條는 없던 것이 다시 非常國務會議에서 改正되었어요. 여태까지 받지않던 것을 받도록 法을 改正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國會에서 通過된 문제같으면 여기에서 저희들 자신이 말씀을 드린 필요없이 다시 議員立法으로 改正할 문제지만 이것은 非常國務會議에서 通過된 문제이기 때문에 政府立法으로 政府에서 財務部와 內務部와 協議해 가지고 이 但書規定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부가 但書規定이므로 돼 있습니다. 이것만 刪除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刪除하지 않으면 별도리없이 內部에서도 이 法律條項만을 가지고 徵收를 하게됩니다. 內務部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法의 근본정신은 그것이 아니자만 이 條項을 따지면 불여야 한다고 해석이 나온다는 公式的인 公文을 제가 內務部長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農水產部에다가

이미 이러한 사항을 内務部에서 通告한 것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非常國務會議에서 通過된立法이니만큼 政府立法이나 다름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政府立法으로 잘못되었으니까 問題條項을 削除할 수 있도록 關係 財務部나 内務部와 折衷해 가지고 이번 會期에 이를 改正해야 善意의 被害者가 없을 것으로 長官께서 이 자리에서 이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第9條 4項과 第10條 9項에 대해서 명백히 改正할 수 있도록 政府가 어떠한 折衷을 한 것이며 또 이 문제를 農水產部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명백히 여기서 答辯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에 政府에서 이것이 안된다면 우리 農水產委員會가 決議해서 財務委員會에다가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政府는 명백하게 政府立法으로 이루어진 문제이니만큼 잘못된 것을 政府가 是正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見解에서 오늘시간이 넘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炳玉：政府側의 答辯을 듣겠습니다. 農水產部長官 答辯해 주세요.

○農水產部長官 鄭韶永：어제 金在春委員님 質問에 충분한 答辯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補充答辯을 먼저 드리면 이 租稅減免規制法 第9條 4項에 대해서 가지고 改正된 내용을 제가 알기에는 讓渡稅品分에 있어 가지고 원래 畜產에 供與하는 財產으로써 물론 당연히 非課稅對象이 되겠지요. 그 財產이 畜產用途 이외의 非畜產用으로 다른 用途로 轉用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稅金을 소급해서 追徵을 한다 이러한 式으로 改正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内務部意見으로서는 그 財產이 원래 목적하고 달리 非畜產에 轉用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修正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農水產部 意見으로서는 그러나 다른 用途에 財產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都市計劃이라든지 다른 客觀的인 要因에 의해 가지고 그 財產이 轉用이 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課

稅를 하는 것은 가혹한 얘기라 해서 農水產部에서는 法務部에 有權解釋을 依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法務部의 有權解釋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용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法律専門家하고 좀더 의논하고 法務部의 有權解釋이 依賴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農水產部 입장에서는 그것이 故意의으로 用途에 財產이 轉用되지 아니하고 다른 客觀的인 要因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都市計劃이라든가 이러한 與件에 의해 가지고 財產이 移轉된 경우에 있어서는 마땅히 追徵對象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擔當長官의 결심은 일단 法務部의 有權解釋이 날 때까지 時間을 주시면 그 결과를 보아서 内務部하고 折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